

의안번호	2211204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 8. 28.
추계번호	25A35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항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②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③제65조1)에 따른 상인회 등이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판매시설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1항제5호의2 신설) －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관한 기존 규정에 “판매 시설”을 추가하는 것임 * 시장등: 현행법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의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경우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이차 보전 포함)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항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①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②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③이 법에 따른 상인회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을 추가하고, 빈 점포의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의 방법으로 기존 보조 외에 융자(이차 보전 포함)를 추가하려는 것
- 개정안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판매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 외에도 융자 형태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빈 점포의 활용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사업은 없으나,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다른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²⁾은 지역별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고객쉼터 등 복합문화공간이나 공동배송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³⁾은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보육이나 실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2025년도 예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87억 5,000만원, 디지털 전통시장 65억원,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 20억원
 - * [참고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빈 점포 지원 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실시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례를 보면 19~49세의 광진구 거주 주민 중 관할구역 내 시장등(신성전통시장, 중곡제일골목시장)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2년간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있음
 - * 2025년도 예산: 2,900만원
 -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 점포 지원 사업 현황

2) 사업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시장 육성/디지털 전통시장

3) 사업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특성화시장육성-청년상인육성-청년몰활성화

- 개정안에 따라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되고 용자 지원이 신설되는 경우,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 사업이 신규 추진되거나 직접 대출 또는 이차 보전을 위한 용자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빈 점포에 대한 활용 수요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투입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조금 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등의 빈 점포 중 판매시설로 이용될 점포의 수를 추정하여야 하나, 이를 추정하기 위한 사업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
 - －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 22만 6,995개 중 빈 점포는 2만 2,846개(10.1%)임
 - * [참고자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현황(2023년)
 - 또한,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을 실시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대출 수요를 바탕으로 용자 대상자 수 및 단가(1인당 용자액)를 추정하고, 이차보전의 경우 해당 용자 사업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시중 이자율과의 차이를 산출하여 보전 이율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 대출 수요 및 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 아울러, 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 재원 투입 의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판매시설을 추가하고, 빈 점포의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방법으로 용자를 추가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빈 점포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회계, 코드) - 내(내)역 사업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5년 예산(2차추경)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	-	(1,905,130)
- 특성화시장육성	-	(35,720)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사업목적) 시장 특성과 고유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 등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시장 육성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심인 조직 및 특성화 역량을 보유한 곳 ○ (지원조건 및 한도) 국비(40~60%), 지방비(40~60%) 매칭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10% 차등지원 ⇒ <u>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빈공간·빈점포에 고객 쉼터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u>	18,750
▶ 디지털 전통시장	○ (사업목적) 비대면 거래 급증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통시장 디지털화 추진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심인 조직 및 특성화 역량을 보유한 곳 ○ (지원조건 및 한도) 국비(50%), 지방비(50%) 매칭 - (입문) 1년 최대 1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고도화) 2년 최대 4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u>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빈공간·빈점포에 배송 센터 조성 지원</u>	6,500
▶ 청년상인육성	-	(35,720)
· 청년몰 활성화	○ (사업목적)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조성,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지원조건 및 한도) 1년간 몰 당 최대 4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 <u>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지자체가 청년보육공간으로 활용 중인 빈점포가 활성화되도록 육성</u>	2,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 점포 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중년
- 지원기간: 사업수행일로부터 2년간
- 지원금액: 보증금 전액(최대 1,000만원), 임차료 50%(최대 50만원)
- 지원규모: 5개 점포(5명)

□ 추진실적

- 사업 수혜자 현황
 - 2024년: 1명
 - 2025년: 1명 ※ 기존 사업점포 계약승계로 보증금 미집행
-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8.11.기준)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99,683	15,344	28,700	4,567	-
보증금	75,000	10,000	-	-	사업예산이월
월세지원금	18,000	1,050	28,200	2,800	-
사무관리비	6,683	4,294	500	1,767	-

자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고자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현황(2023년)

(단위: 개, %)

구분	전체 (A=B+C+D+E)	영업점포(B)	기타점포(C) ¹⁾	노점(D)	빈점포(E)	빈점포 비율 (E/A)
전체	226,995	171,529	4,539	28,081	22,846	10.1
서울	45,516	39,421	602	1,060	4,433	9.7
부산	26,597	20,991	368	1,500	3,738	14.1
대구	17,407	12,284	600	1,255	3,268	18.8
인천	11,897	10,790	145	589	373	3.1
광주	3,284	2,546	70	456	212	6.5
대전	3,134	2,585	133	251	165	5.3
울산	5,719	3,456	62	1,583	618	10.8
세종	789	500	5	224	60	7.6
경기	25,313	20,602	373	2,164	2,174	8.6
강원	8,986	6,482	375	1,383	746	8.3
충북	7,410	5,408	161	1,286	555	7.5
충남	8,877	6,183	262	1,875	557	6.3
전북	6,111	4,053	177	1,481	400	6.5
전남	10,994	5,771	237	4,314	672	6.1
경북	18,924	12,896	343	3,955	1,730	9.1
경남	21,899	14,030	625	4,226	3,018	13.8
제주	4,138	3,531	1	479	127	3.1

주: 1) 기타점포: 창고 및 사무실 등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빈점포경영실태조사」